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

발의연월일: 2016. 5. 30.

발 의 자:위성곤·조정식·이석현

김동철 • 이찬열 • 김관영

김경협・오제세・추미애

윤후덕 • 백재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음. 특히 정부가당연히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할 의무마저 이행하지않고, 사무처 구성 및 예산배정 등의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진상규명 등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었음.

더욱이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일부의 주장처럼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위 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2016년 6월말로 종료되는 나머 지 활동 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월 2월 4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그 활동을 보장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법률 제 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본문 중 "1년으로"를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를 "2017년 2월 3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을 "세월호 선체 인양(육상 거치)이 완료된 후 최소 6개월의 진상조사 활동기간이 보장되지 않는"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을 "선체 인양이 완료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활동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도"를 "제1항에도"로, "추가로 3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5
의 임기는 <u>1년으로</u> 한다. <u>다만,</u>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u>으로</u> <u><단서 삭제></u>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	
<u>다.</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u>2017년 2월 3일까지</u>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u>이 기간 이내에 활</u>	-세월호 선체 인양(육상 거치)
<u>동을 완료하기 어려운</u> 경우에	이 완료된 후 최소 6개월의 진
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상조사 활동기간이 보장되지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	<u>않는</u> 선체 인양이 완료
<u>장할</u> 수 있다.	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활
	<u>동할</u>
② 위원회는 <u>제1항 단서에도</u>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	
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	
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	
다.	